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19나2179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19나21799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15 선고 2019가단7699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전효철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최정아

변론 종결 2021. 7. 15.

판결 선고 2021. 8. 26.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15. 선고 2019가단7699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2018. 12. 3.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8. 3. 2. 접수 제220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8. 12. 3. 접수 제1428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와 B가 2009. 3. 27.에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09. 3. 27.부터 2010. 3. 26.까지(이후 2018. 3. 16.까지로 변경)로, 2015. 3. 6.에 보증원금 25,000,000원, 보증기한 2015. 3. 6.부터 2016. 3. 4.까지(이후 2018. 3. 2.까지로 변경)로 각 정하여 원고가 B의 주식회사 기업은행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주식회사 기업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나. 이에 따라 B가 주식회사 기업은행으로부터 2009. 3. 27.에 50,000,000원을, 2015. 3. 6.에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B가 2017. 12. 14. 이 법원 2017개회42499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

라. 주식회사 기업은행이 2018. 1. 8. 원고에게 위 각 대출에 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2018. 1. 31. 주식회사 기업은행에게 65,119,8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B가 2018. 2. 27.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1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8. 3. 2.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220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이 법원이 2018. 11. 8. B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B가 2018. 12. 3. 피고에게 채무변제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428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222,119,152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80,000,000원+ 자동차 가액 32,950,000원+ 보험해약반환금채권 5,169,152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000,00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434,582,117원이었다.

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224,619,152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82,500,000원+ 자동차 가액 32,950,000원+ 보험해약반환금채권 5,169,152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000,00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402,083,197원이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7호증(이하 가지번호 생략),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기관, 중소기업은행, 법원행정처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인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한 65,119,806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심리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밝혀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참조).

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인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은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위에서 인정한 사실 가운데 특히, ①B가 2017. 12. 14. 이 법원 2017개회42499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그 폐지결정일인 2018. 11. 8.까지 진행되었던 사실, ②B가 피고와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폐지결정 직후인 2018. 2. 2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18. 12. 3. 이 사건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③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인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채무자인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그로 인한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변제의 기한을 유예받기 위한 B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도 피고의 요구가 아닌 B의 제안에 의한 것이다. B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피고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B가 무자력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피고가 2015. 4. 19. B에게 16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B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채권자목록에 피고와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 스스로도 B로부터 채권을 계속하여 변제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명한

판사최희동

판사안철범

별지